

##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

### 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 사 명 : 왕산면 큰늘막골천(대기리 579) 일원 취입보 설치공사

나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일

다. 공사현장 :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579번지 일원

라. 공사개요 : 취입보(H=1.0m, B=10.5m, L=7m) 설치 1개소

※ 설계도서 사전열람: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준표(033-640-5348)

마. 추정금액 : 72,360,000원

추정가격 : 50,400,000원      부가세 : 5,040,000원      관급자재대 : 16,920,000원

※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5,44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입니다.

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 16,920,000원입니다.

바.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: 2026. 8. 24.(월) 10:00

사.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: 2026. 8. 26.(수) 10:00

아. 개찰일시 : 2026. 8. 26.(수) 11:00

자. 개찰장소 :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

※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”에 의거 **재입찰을 실시**하며,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**2026. 8. 26.(수) 당일 15:00**, 개찰일시는 **당일 16:00** 예정이며,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,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**【철근·콘크리트공사업】**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,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 소재지가 **강릉시**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
나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.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다.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라. 본 입찰은 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」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지

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마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**‘조세포탈 등 한 자’**로서 **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**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### 3.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.

나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주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
다.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**예정가격에서 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합산액)을 감액한 금액의 89.745%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**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
라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마.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,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헤드리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바.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.

※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.

### 4. 견적서 제출의 무효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“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”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# 5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**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**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.

나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**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**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6.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

- 가. 행정안전부 예규 (최근호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9장 「계약 일반 조건」(공사계약에서 **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**)를 준수하여야 하며, **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나.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「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**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다. **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,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(소개서 직접지급 금지)** 하여야 합니다.

## 7. 하도급지킴이 사용 관련사항

- 가. **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(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,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)**인 경우 계약체결시 **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(하도급업체 포함)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(고정계좌 등)를 착공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,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변경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## 8 청렴계약 이행준수

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 9.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

가.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: 농정과 이준표(033-640-5348)

※ **현장설명**은 생략하고 **설계서 열람**으로 같습니다.

나. 공고 관련 문의처 :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(☎033-640-5293)

다.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

## 10. 기타 유의사항

가.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**국민건강보험료**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, 입찰금액(산출내역서 포함)에 **조정 없이 반영**하여야 하며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)에 의거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** 역시 **조정없이 반영**되어야 합니다. 또한 건설기술진흥협상의 **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**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.

| 구분    | 국민건강보험료   | 국민연금보험료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부금비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금액(원) | 735,067   | 971,229 | 96,587    | -         |
| 구분   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| 안전관리비   | 품질관리비     | 합산액(A값)   |
| 금액(원) | 1,058,577 | -       | -         | 2,861,460 |

- 나.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, 납부이행 각서로 같습니다. 또한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- 다.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, 공사입찰유의서,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 계약 특수조건,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설계서, 관련법령, 관련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마.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바.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**청구금액(공급가액)의 2.5%**에 해당하는 **강원도지역개발 공채**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사.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아. 「**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**」 제12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(3급 이상)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**물품·용역·공사** 등의 수의계약(1인수의,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)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「**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**」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.

※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<별표2>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「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」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자.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9일

##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

### 「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」 운영

강릉시 공무원은 금품·향응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 금품·향응·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방법1 : 시청 홈페이지([www.gn.go.kr](http://www.gn.go.kr)) 접속 ⇒ 시민참여 ⇒ 신고센터 ⇒ 공직부조리신고
- 방법2 : (25522)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청 감사관
- 방법3 : 전화신고 (033-640-5033 : 강릉시 감사관실)

### 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 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 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[별표2] 강릉시 통합이행서약서로 같음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           |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발주내용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  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 
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월일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